

19. 위탁업무수행 일지(총괄)

연도	방문 일자	업무수행자		업무수행 내 용	문제점 및 개선지도사항	사업주 조치내용			사업주 확인
		자격	성명			개선	진행	미 개선	
2024	01-05	간호사	김희은	검진 결과 확인 및 보존 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제2항 <검진 결과표 서류 보존> : 5년 보존 : 제조 등이 금지, 허가 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 물질은 30년 보존 ◎ 2023년 하반기 실시한 근로자건강진단 결과표 는 사업장에 보존(일반-5년, 특수-발암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30년)바랍니다. ⇒ 검진 결과 유소견자 사후관리카드 작성하여 제공 예정임 - 일반검진-질병유소견자: 6명, 요관찰자: 5명 - 특수검진-질병유소견자: 4명, 요관찰자: 17명	○			강병수
2024	01-05	간호사	김희은	유소견 근로자 사후관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조 제1호 :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건강상담, 보 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강성철 근로자 고혈압 유질환자로 3일 정도 고 혈압 약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금일 측정된 혈압 이 167/122mmHg로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에게 규칙적인 혈압약 복용 지도 하였으니 사업장에서 도 관심을 가지고 사후지도 바랍니다. ⇒ 엄기훈 외 4명의 유소견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 상담 진행하였습니다. 상세한 상담 내용은 첨부 한 '18. 근로자 건강상담' 일지 참고하시고 유소견 근로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바랍니다.		○		강병수
2024	01-05	간호사	김희은	기업건강증진 지수 평가 결과 설명	◎ 2023년도 귀 사업장의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항(평가 결과표 첨부) ⇒ 평가 결과 46.6점으로 귀 사업장의 기업건강증 진지수는 “도입” 단계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사 업장 근로 특성, 근로자 건강 특성 등 기초데이터 를 확보하고 있으나 확동이 미흡한 단계로 자세 한 사항은 첨부한 결과표의 분야별 평가 항목 내 용 참조바랍니다.	○			강병수

19. 위탁업무수행 일지(총괄)

연도	방문 일자	업무수행자		업무수행 내 용	문제점 및 개선지도사항	사업주 조치내용			사업주 확인
		자격	성명			개선	진행	미 개선	
2024	01-05	간호사	김희은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추진 지도	◎ 분야별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 결과 * 근골격계질환예방 분야 : 75점 * 뇌심혈관질환예방 분야 : 45점 * 직무스트레스 관리 분야 : 50점 * 생활습관 개선 분야 : 10점 ⇒ 사업장의 건강증진 운동 우선활동 분야는 생활습관 개선 분야입니다. 2024년도에는 흡연, 음주, 비만, 운동실천, 식이습관, 수면습관 등에 관한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 실시 및 흡연자, 음주자, 아침 결식자 등의 생활습관 개선 분야에서 집중관리 해야 할 위험 근로자를 파악하고 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금연, 절주, 식생활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 후 성과를 평가하고 차기 년도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 바랍니다. ⇒ ‘자체 건강증진 개선계획 작성 가이드’를 메일로 첨부 하오니 사업장 내 건강증진프로그램 추진 시 참고바랍니다.			○	강병수

연도	방문 일자	업무수행자		업무수행 내 용	문제점 및 개선지도사항	사업주 조치내용			사업주 확인
		자격	성명			개선	진행	미 개선	
2024	01-05	간호사	김희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운영 지 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임 동법 시행령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 의 등>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 원,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2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산업안 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지 않은 경 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정기회의는 분기마다(임시회의-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 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은 2024년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시간, 장소 등의 일정을 수립하시고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 정기회의를 개최 및 회의록 보존바랍니다. ⇒ 시행령 제37조를 위반하여 정기회의를 개최 하지 않을 경우(1회 당)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강병수

연도	방문 일자	업무수행자		업무수행 내 용	문제점 및 개선지도사항	사업주 조치내용			사업주 확인
		자격	성명			개선	진행	미 개선	
2024	01-05	간호사	김희은	미세먼지로 인 한 건강장해 예 방지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의 제26호 <분진작업의 종류> : 황사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 지역에서의 옥외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보건조치> : 사업주는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단기간의 노출은 천식 등 호흡기계질환 악화, 폐기능 저하,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하고 장기간에 걸쳐 노출될 경우 심혈관질환, 호흡기계질환, 폐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12~3월)은 대기 정체 심화로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이들 먼지는 매우 작아 숨쉴 때 폐포 끝까지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법에서는 황사 또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 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을 분진작업으로 지정하고 있어 옥외작업 근로자들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옥외작업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첨부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가이드' 참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적절한 보건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장에서는 1. 대기오염 정보 수시 확인 2. 마스크 지급, 착용 및 교육 ① 옥외작업자에게 방진마스크(2급 이상) 또는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를 제공하여 착용토록 관리 ② 작업 전 옥외작업자에게 미세먼지 유해성 및 예방 방법 주지 ③ 마스크 지급하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에 대해 교육 3. 작업 조정 및 관리 ①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시 옥외장소에서의 작업 조정하거나 단축 ② 민감군(임산부, 노약자, 뇌심혈관질환자, 호흡기, 알레르기질환자 등)은 미리 파악 후 옥외작업을 단축시키는 등의 조치 4. 기타 건강관리 :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옥외작업 후에는 손씻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 가이드' OPS 첨부		○		강병수